

7. 土地超過利得稅法施行令中 改正令(案)立法豫告

자료제공 : 재정경제원공고 제1997-117호 1997. 12. 4.

개 정 이 유

최근의 지가가 하향안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1997년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률의 범위를 조정하여 예정과세를 시행하지 않기 위함.

주 요 내 용

1997년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

대한 정상지가상승률은 기준율에 그 율의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함.

주택회보